

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10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10. 2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양성우】

가. 제안이유

-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방법(안 제3조)
- 마포구민 휴양소의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(안 제5조)
- 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·이용료 감면·이용료 반환(안 제7조~제9조)
- 마포구민 휴양소의 이용 제한(안 제10조)

- 책임 및 변상, 보험 가입(안 제11조, 제12조)
- 휴양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13조~제1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(공공시설)
 -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12조(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)
 - 입법예고: 2025. 9. 4. ~ 9. 2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개정내용

- 제3조 (휴양소 운영 방식)

마포구청장은 휴양소를 직영 또는 타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.
- 제5조 (이용 대상 및 우선 이용)

휴양소 이용은 마포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, 구청 공무원·공공기관 직원·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일부 이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.

○ 제7조~제9조 (이용료·감면·환불)

휴양소 이용료를 부과하고, 저소득층 등 대상자에 대해 감면 규칙을 정하며, 이용 취소 시 환불 기준을 조례로 규정함.

○ 제10조 (이용 제한)

휴양소의 질서나 시설 훼손,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.

○ 제11조~제12조 (책임 및 보험 가입)

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 기준을 정하고, 휴양소 운영자는 보험에 가입해 이용자의 피해를 보장해야 함.

○ 제13조~제16조 (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)

휴양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위원회의 구성, 역할, 심의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함.

③ 제정의 법적 타당성, 정당성

○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, 동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·복지·문화 향상 등을 위한 자치사무는 자율적으로 처리가능함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(예: 휴양소) 사용료 및 관리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, 반환, 이용 제한, 보험 가입, 변상 책임 등을 규정함.

○ 지방재정법 제17조(보조금의 교부)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비영리적 공공복지시설로 판단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·운영이 가능함.

- 마포구는 서울 도심 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쾌적한 휴양 및 힐링 공간 확보에 대한 수요가 높고, 특히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형 휴양 지원 제도는 복지형 균형 정책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.
- 조례안에 따라 운영되는 휴양소는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이므로, 구 재정의 목적성(복지 증진)에 부합하며, 재정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.

4]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

- 주민복지 및 여가문화 활성화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 또는 감면 혜택으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가 접근성이 향상됨.
- 행정 체계 정비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조례에 의해 휴양소의 운영 방침, 책임 주체, 이용대상, 요금 체계,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.
- 리스크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로 책임 및 보험 조항을 통해 사고·재해 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, 조례에 규정된 관리 기준은 사업자 또는 운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게 함.

5] 휴양소 운영시 유의사항

- 조례에 ‘우선 이용대상자’를 규정하고 있으나,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행정 자의성 또는 민원 발생 우려.
- 이용료 감면 또는 반환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, 예산의 누수 또는 형평성 시비 발생 우려.

- 이용자의 고의·과실에 대한 책임 및 변상 규정은 있으나, 실제 집행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, 손해배상 절차, 분쟁 발생 시 처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 우려.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, 공공 서비스 확대라는 정책 목표로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련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한 조례로 판단됨.
- 다만, 휴양소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번 행정건설 상임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고 휴양소 운영시 유의사항을 규칙이나 세부 운영지침에 명시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, 다수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는지, 이용대상자가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등 시간을 갖고 진행하여 조례안의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(공공시설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□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